

[한총련 반성폭력 규약신설에 대한 단위토론 제안]

수신 : 각 급 단위 학생회

발신 : 14기 한총련 건설준비위원회 / 12기 전여대협(건)

○ 단위토론방도 제안

반드시! 단위별로 도움글을 꼭! 읽을 수 있도록 합시다.

학교별, 지역별로 대의원 대회를 준비하면서 대의원 모임을 진행할 때 꼭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를 단위로 돌아가서 공유합니다.

교양이 필요하다면 전여대협에 제기하셔서 교양 요청을 따로 하셔도 좋습니다.

우> 도움글

-신설안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문서

-대오 내 성폭력을 근절하자!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사건지원이란?

우> 토론과제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대오 내 성폭력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 얘기해보고, '만약 우리 단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을 가정해서 대책과 사건 해결 방안을 세워보자.

우> 단위별 실천과제 세우기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교양 등 단위별 실천을 진행하자.

○ 반성폭력 규약 신설의 의의

불평등한 남녀차별의식,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잘못된 성인식과 제국주의의 왜곡된 성문화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평균 32건의 성폭력이 신고 되고 있다. 신고 되지 않는 사건까지 추정하면 1년에 약 100만 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성폭력은 인간의 자주성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이것은 한총련이 지향하는 사회에 철저히 반하는 행위이다.

한총련은 인간의 자주성을 파괴하는 성폭력, 성차별을 근절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에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투쟁해 나가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우리 사회의 모순과 일꾼들의 의식 부족으로 인해 한총련 대오 내에도 성폭력 문제가 발생해 왔고, 여성문제에 대해 스스로 잘 알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이를 소홀히 대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성폭력 규약은 한총련 일꾼 내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 근절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규약 제도화의 의의 (★★★★★)

1 규약 신설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대 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성폭력 예방 실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 단위에서 실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의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규약에 의거하여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신속히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대의원들의 결심으로 한총련이 3백만 대학생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아
우리사회의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주체적으로 투쟁하고,
부족한 것은 과감하게 혁신하자!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총련 규약 8장에 반성폭력 특별규약을 신설, 삽입하고자 합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반성폭력 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내부규약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보호하며,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 확보와 성평등한 문화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1. 상대의 신체에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등의 행위
 2. 성적인 농담, 성적인 폭언, 음담패설을 하는 것 등의 행위
 3. 성 비하나 성 상품화한 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등의 행위
 4. 팩스나 컴퓨터 등의 통신수단으로 성비하적 욕설이나 발언과 그림을 보내는 것 등의 행위
 5. 기타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것으로 상대방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
- ②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③ ‘2차 가해’라 함은 피해자가 성폭력 1차 피해에 연이어서 피해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가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폭력 행위를 신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전 과정에서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한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과 불이익 등을 말한다.

제 3 조 (의무)

성폭력은 인간의 자주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유린하는 범죄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외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구성원의 성적자율권을 보장하며 피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약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 중 한 사람만 한총련 구성원이어도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한다.
- ② 본 내부규약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 사건에는 시효를 두지 않는다.

③ 본 규약의 적용 기준 시기는 사건 발생시점이며 이후 쌍방의 지위 변화가 있더라도 이 규약이 적용된다.

제 2 장 사건의 해결

제 5 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 ①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와 해결기구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 ⑦ 신고인과 증인의 보호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해결기구의 구성)

- ① 해결기구는 기본 사건당사자가 속한 단위에 두며 명칭은 OO성폭력사건 대책위, OO성폭력사건 비대위 등으로 할 수 있다.
- ② 단,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해결 단위를 결정한다.
- ③ 해결기구 구성 시 여성을 1/2 이상으로 한다.
- ④ 전여대협과 한총련 중앙 및 지역, 지구총련은 사건해결과정을 책임 있게 총화하고, 방치되거나 은폐되는 일 없이 올바르게 빠르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지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단, 피해자의 신상보호 등을 위해 이 모든 총화과정과 지도는 제 5조에 의거한다.

단

제 7 조 (해결기구의 임무)

해결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사건의 조사와 중재
2. 가해자의 징계
3.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조치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 8 조 (징계)

성폭력 사건의 해결기구는 성폭력 사건의 수위와 당사자 보호를 고려하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를 포함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피해자의 활동공간으로부터 가해자를 공간적으로 격리한다.
- ② 성폭력이나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다.
- ③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 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를 한다.
- ④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가해자가 지급한다.
- ⑤ 피해자와 해결단위에 반성사과문 및 총화서를 제출한다.
- ⑥ 다음의 경우에는 지위 자격 박탈, 실명공개, 법적 대응 등으로 가중 처벌한다.
 1. 징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가해자가 신고인, 증인, 해결기구 등에 보복하는 경우
 3. 재범, 상습적인 경우

제 9 조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등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 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0 조 (예방교육)

- ① 각 단위는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의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②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해자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후교육을 실시한다.

제 11 조 (공고)

해결기구는 징계결과를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자치규약은 통과하는 날로부터 공고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의무)

전여대협, 한총련 중앙과 이하 각 단위는 이 규약의 취지와 내용을 매년 알릴 의무가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반성폭력 규약(신설안)- 해설

제 2 조 (정의)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직장 내에서의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통신매체를 통한 회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매매, 포르노(음란영화, 도서, 음란만화), 스토킹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유발, 그를 이용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조 (의무)

성폭력은 인간의 자주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유린하는 범죄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외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구성원의 성적자율권을 보장하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누구나 성폭력의 범죄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며 가해자 처벌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피해자의 치유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다. 피해자에게 성폭력은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사건이며 정신적(불면증, 불안감, 어두움과 혼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신체적(소화불량 등)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성폭력 사건이 온전히 해결된다는 것의 의미는 가해자 처벌과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치유 되었는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통해 제 2, 3의 피해자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4 조 (적용범위)

② 본 내부규약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 사건에는 시효를 두지 않는다.

→ 규약 이전의 사건이거나 사건이 발생한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규약 제정 후 접수된 사건이라면 시효에 상관없이 규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③ 본 규약의 적용 기준 시기는 사건 발생시점이며 이후 쌍방의 지위 변화가 있더라도 이 규약이 적용된다.

→ 본 규약의 적용 기준은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사건 해결 과정에서 서로의 지위 변화나 활동 공간이 변한다 하더라도 사건 시점 기준으로 규약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제 6 조 (해결기구)

① 해결기구는 기본 사건당사자가 속한 단위에 두며 명칭은 OO성폭력사건 대책위, OO성폭력사건 비대위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단,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해결 단위를 결정한다.

→ 해결 기구는 피해자가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사람과 가해자, 가해자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단위를 지정하는 것에 따라 해결기구 구성원과 단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③ 해결기구 구성 시 여성을 1/2 이상으로 한다.

→ 가부장적 사회에서 학습되어진 정도에 따라 사건 해결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95% 이상 여성임을 감안하여 좀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결 기구 구성원의 절반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 10 조 (예방교육)

① 각 단위는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의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성폭력은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과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한 개인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공동 책임이며 여전히 그 공동체에 성차별적 관습과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각 단위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각 단위의 역량에 따라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단위의 경우에는 개별 진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여대협,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해도 됩니다. 또한 같은 지구총련 단위들끼리 묶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상층 간부들, 지구총련 간부들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해자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후교육을 실시한다.

→ 2차 가해는 사실 무엇이 성폭력인지 잘 몰라서 더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함으로 인해 더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한다. 성폭력의 개념과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건 이후 사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건이 해당 공동체 안에서 공론화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칫 무조건적 교육으로 인해 원하지 않았음에도 사건과 피해자가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오 내 성폭력을 근절하자

<12기 전여대협>

대학 또한 우리 사회의 다른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대학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학내 여학생 단위들은 학내 반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대부분의 학교에 반성폭력 학칙이 부족하나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우나 교수님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학칙에 의거해 사건해결을 할 수 있다.

‘대오 내 성폭력’의 정의 또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폭력의 정의와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정의하는 이유는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일정한 특징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심각성을 통감하고 책임성 있게 성폭력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대오 내 성폭력’이라고 정의하는 측면도 있다.

그간 대오 내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직 보위 논리 때문에 이렇다 할 공론화과정 없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제대로 책임 있게 해결되기 보다는 끝이 흐지부지 되어버릴 때도 있었다. 이에 한총련과 전여대협은 규약을 신설하면서 성폭력 예방과 사건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성폭력에 대한 일꾼들의 각성을 높여 일꾼들이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성폭력을 규정짓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① 성폭력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지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어야 한다.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에 대한 판별은 상대방인 피해자가 그 행위를 불쾌하게 느끼고 스스로의 몸에 대한 침해행위로 경험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성폭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객관’을 들이댄다면, 얼마큼 만졌는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식의 물리적인 기준으로 성폭력이 판단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며, 그것은 결국 피해자의 주관과 사고를 깡그리 무시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② 성폭력의 형태에 따라 심각도를 규정지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심각도를 강간, 준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유형을 구분 짓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성폭력의 형태에 따라 심각도를 구분지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성폭력을 유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각각의 성폭력의 형태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이나 느낌, 폭력을 느끼는가의 여부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고, 그 행위가 성폭력으로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만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졌을 때, 성폭력은 ‘더 심각한 성폭력’과 ‘덜 심각한 성폭력’ 혹은 ‘심각한(심한) 성폭력’과 ‘경미한 성폭력’으로 양분된다. 성폭력에 대한 규정은 피해자의 경험이나 느낌, 폭력으로 느끼는가의 여부가 되어야지, 물리적으로 그 행위가 어떠했던가만을 잣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성폭력의 심각도를 구분 짓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성폭력에만 논의의 초점을 집중시키며 피해자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흔히 보이는 반응인 ‘강간범=죽일 놈’의 도식은 강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일상적이고도 무수한 성폭력들을 성폭력 담론에 있어서 배제시킴으로써,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성폭력에는 침묵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며 성폭력을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문제 있는 몇몇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킨다.

2. 대오 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

① 한 사람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짓밟는 행위가 대오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회는 학우들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학우들이 주인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꾼들의 생활이고 활동이다. 그런 학생회에서 활동을 하는 일꾼들이 사람의 자주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는커녕 되려 한 사람의 자주성과 사회정치적 생명을 철저히 짓밟는 작태를 저질러야 되겠는가?

성폭력은 그것이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상관없이 평소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몸을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몸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성인식이 행동이나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성폭력은, 사람이 자주성을 가진 존재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켜 바라보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바탕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사람과 조직, 운동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는 행동, 한 사람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이다.

② 당사자들이 운동을 정리하고 조직이 깨어진다.

사례들을 보면 '사상이 높고 경험이 많아 핵심이라고 불리는 남자선배'들이 여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온 경우가 많이 있었다. 피해를 당한 이는 운동과 조직,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안고 운동사회를 떠난 경우가 허다하지만 오히려 가해를 한 이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운동사회 내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건히 버티고 있게 되고, 심지어 또 다른 2차 3차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경우들도 많다. 이러한 기풍은 결국 성폭력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일꾼들 속에 심어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된 것이다.

또한 조직이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걸 가지고 조직에 누를 끼치다니' '나를 믿고 한 번 털어놔보라' 며 여기저기서 고통을 재확인시킨다. 조직의 무관심과 관점 없음은 피해자에게 비수로 꽂혀 크나큰 상처가 된다. 이것은 운명을 같이하고자 하는 동지라고 생각했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고 당사자는 조직을 신뢰하지 못하고 운동을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3. 대오 내 성폭력의 사례

▲ 모 대학 선거에서 정후보였던 가해자가 선거운동으로 피곤한 여자일꾼에게 호감을 보이며 학생회실로 자러 오라고 했다. 남자일꾼이 학생회실에서 자고 있던 여자일꾼을 깨워 “뽀뽀 한번만 하자”고 해 여자일꾼은 안된다고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가해자가 연행되어 구속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가해자에 연관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듣게 되었고, 1년간은 가해자를 보아도 외면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가해자)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분노가 다소 누그러뜨려졌다. 그러나 그 후에 가해자가 저지른 또 다른 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알게 되고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가해자의 패턴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게 되었다. 이후 학생회 내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는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위원회에 사건을 고발했다. 100인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의 기간 성폭력 사실들이 대증적으로 폭로되었으며, 폭로된 이후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100인위원회에 접수되었다.

▲ 모 대학의 핵심일꾼은 자신이 좋아하던 여자일꾼을 학생회 직책 제안의 명목으로 만나 술을 잔뜩 먹였다. 그리고 비디오방으로 데려가 더듬고 키스하려고 하는 등 성폭력을 행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에서는 남자일꾼에 대한 총화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가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아무야 넘어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도 이러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였다.

그 이후 또 다시 그 여학생의 생일날에 주위 사람들을 설득해 술 취한 여학생을 자신이 데려다준다고 했고, 아침에 술이 깬 여학생은 자신의 옷이 다 벗겨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성폭력을 경험하는 전반 과정에서 여학생은 매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게 대해 믿음을 못 가지고 학생회 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가다가 결국 학생회 활동을 접었다.

▲ 모 대학 생활방에 자고 있던 남자일꾼이 옆에 자고 있던 여학생의 가슴을 더듬었고, 이에 놀란 여학생은 즉각 대처했으나 남자일꾼은 모른 척 했다. 이에 대해 여학생이 총여학생회로 신고했고, 총여학생회가 문제를 제기해, 총학생회 일꾼들 속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남자일꾼이 속한 단 위에 총여학생회 일꾼이 직접 들어가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과 토론 및 비판사업을 진행했으며, 남자일꾼은 성폭력 사실과 처음에 발뺌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며 사과문을 썼다. 일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진행하고, 가해남학생이 일꾼들 앞에서 직접 자기비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 여학생회 일꾼이 생활방에서 자고 있다가 누군가의 손길을 잠깐 느꼈고 순간 온몸이 굳는 듯한 느낌이 받았다. 매우 찜찜했지만 자고 있던 중이라 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잤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꿈이 아니라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분노해 총여학생회장과 자신의 명의로 생활방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자일꾼은 성폭력을 당한 이후 반년이 넘도록 생활방에 가지 않았다.

▲ 거점 농성투쟁을 진행하던 중 남자일꾼이 자고 있던 여자일꾼의 몸을 더듬은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속한 대학의 총여학생회에 신고를 하였고, 총여학생회는 해당 단위에 제기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러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는 군대로 도망가 결국 성폭력 문제는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

▲ 모 대학에서 생활방 성폭력을 저질렀던 남자일꾼이 단위 학생회장으로 추천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에 대해 총여학생회가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기하였고, 해당 단위는 그 남자일꾼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였다.

위의 사례들은 지금까지 실제 있었던 사건들의 극히 일부분이다. 대오 내 성폭력의 많은 사례들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알려지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여학일꾼들 사이에서 정리되거나 전연대협으로 바로 신고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우리 단위에는 그런 일이 잘 없다’ 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오 내 성폭력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제대로 된 피해자 중심의 관점과 해결 원칙이 없는 조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입고 있다.

4. 대오 내 성폭력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과 그의 근원

① 운동권 조직보위 논리

일꾼 내 성폭력이 발생하면 운동사회의 ‘도덕성’ 에 치명타를 입는다는 얘기를 하며, 이를 쉬쉬하고 덮어두기에 급급하는 것이 운동조직 보존의 논리이다. 기존 사회의 질서와 문화, 구조에 대한 비판세력으로서, 그리고 진보의 이념을 지향하는 운동조직내의 도덕성은 상처받아서 안 될 성질의 것이며 운동권의 비도덕성이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 그간 구성원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성폭력을 묵인해 온 것이다.

이러한 기풍은 일반사회에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조차 은폐시키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헐박과 2차 가해를 가하게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것은 운동의 도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문제이다. 운동의 도덕성은 잘못된 문제를 덮어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자체나 그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크나큰 문제이며 때문에 조직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② 일꾼들의 가부장적 여성관

여성을 보는 시각이나 여자에 대한 태도는 일반 사회에서나 운동단체에서나 크게 차이가 없다. 누구도 극대화된 성상품화 자본주의 가부장제 아래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어떤 학교들에서는 ‘우리는 여자는 키우지 않는다’ 고 공공연히 얘기한다. 남성중심조직에서 주변적 존재로서의 여성들은 흔히 "애써서 키울 필요가 없는 존재"로 간주되며, "조직에서 여성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 문제는 기업이나 학교 등 사회 일반의 조직에서의 여성 배제 관행과 거의 다름없이 나타난다.

보수가 아닌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한다. 여성들이 차별받고 힘든 현 상황을 용인하는 것이 보수라고 한다면 진보적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은 그 현실을 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관점을 버리고 진보로 나아가자.

③ 변혁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때로는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제국주의의 수입품인 페미니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로 매도 당해왔던 측면이 있다.

여성해방은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이라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는 다르게 변형되어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내용을 너무나 '사소한' 일로 대하면서 여성해방은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중에나 하자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일꾼들도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제 하의 여성차별' 에 대한 지적을 하는 여학생운동가들의 예리한 눈을 불편해하면서 과민하다 혹은 교조주의적이다 피해의식이 있다 등등의 얘기를 하여왔다. 이것은 일정 정도 여성들의 권리쟁취를 위해 대 남성 투쟁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성운동의 페미니스트적 관점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이 땅 민중의 절반인 여성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성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을 지지하고 제대로 해결해야만 자주성 획득을 위한 투쟁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성폭력 해결의 과정은,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며, 가해자가 자신의 성인식과 사상의식을 철저히 비판하고 올바른 성인식과 사상의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 동시에, 모든 일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성인식을 비판하면서 사건을 철저히 조직적으로 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여성문제는 곧 남성문제, 민중들의 문제이며 이 투쟁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사건지원이란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성과 인권팀 권김현영>

피해의식이라는 오래된 문제와 가해자 중심주의

지나친 피해의식이라는 익숙한 말이 있다. 이 익숙한 관용어구는 보통 여성들이 (혹은 여성들과 같이 은폐되어 있지만 명백한 차별을 받는 집단들이)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지나친 피해의식이라는 말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과민한 것은 아닌지, 자신이 뭔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검열하게 하는 효과를 거둔다. 그런데 보통 차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집단들은 차별 당하는 집단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들이댄다. 밤에 늦게 돌아다녔다던지, 치마를 너무 짧게 입었다던지, 순결하지 않았다던지 등 차별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거나 혹은 차별을 스스로 원했다는 식의 이유들 말이다. 그러나 차별 받는 집단들은 차별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차별 받는 이유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차별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내가 혹시 차별 당할만한 것을 하지는 않았나? 내가 충분히 싫다고 말했는가? 라는 식의 자책감은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적 고통 중에서도 오래되고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다.

여성들이 자신이 겪는 차별과 폭력이 성별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발화하게 될 때 흔히 "과민하거나(그래서 남성들의 사회/조직생활에 걸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상상력이 풍부하거나(결벽증이 있는 공중병환자거나)" 혹은 "여자답지 않다"(페미니스트거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거나) 등등의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들의 피해의식에 대한 오래된 놀림과 비난들, 여기에서부터 가해자중심주의가 시작된다. 그 피해가 오래된 것일수록,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이 오래된 것일수록, 피해와 피해의식을 구분하고 지배적/남성중심적인 탈을 쓴 "객관성"와 "이성"은 더욱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가해자중심주의는 피해와 피해의식을 구분하여,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감정이라는 이분법안에 여성들을 가두는 동시에 가해자들이 저지른 가해순간의 주관적인 판단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게 하는 효과를 거둔다. 그리고 "지나친 피해의식"이라는 말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을 안겨 준다. 한 가지는 더더욱 피해자가 되는 것, 다른 한 가지는 입을 다물고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를 가장하는 것이다. 이 때 피해자는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 안의 자책감과 싸우면서, 자신이 이성적이며 객관적이라는 증명을 해내야만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지 못할 바에는 입을 다물어라-라는 것이 바로 가해자 중심주의가 가지는 지나친 피해의식에 숨어있는 경고인 것이다.

가해자 중심주의에서의 피해자 '되기'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의 사건지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이 철저하게 가해자 중심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비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그동안 피해자에게 법적, 심리적 지지와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피해자 중심이라는 말 자체에만 집중해서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만큼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은 범죄가 없다는 현실을 쉽게 무시하고 말이다.

사실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현실 자체가 그동안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이 해석되고 설명되고 처리되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폭력 범죄는 유일하게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를 비난받는 범죄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거의 유일하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변을 밝힐 것을 협박할 수 있는 범죄이다. 발생율이 세계 2위인데도 신고율이 6%에 머물러 있고, 피해자가 겪는 이후 후유증에 대한 사회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현재의 상태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보다는 은폐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비난하기만 해도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쉽게 자신의 가해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적으로) 결백한 피해자라는 것이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가족과 공동체는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사실 피해자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주체로서의 피해자라는 위치보다는 성적으로 무지한 피해자라는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가해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원하는 피해자가 되는 순간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개념 규정한다는 의미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 규정한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를 때 피해자의 해석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가해자 중심주의의 무서운 점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우선적으로 남성의 말을 믿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지원이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역전이다. 예를 들어, 화간이라고 하는 가해자의 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다. 당사자 중 한 명이 강간이라고 한다면 화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보다 강한 객관성을 지닌 해석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혹자는 만약 누가 보기에든 명백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사건을 피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성폭력이라고 할 수 없느냐고 묻는다.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피해를 해석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하되, 변치 않는 고정된 존재도 전능한 존재도 아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을 규정한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길-회피나 부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가해중심사회에서의 피해자 위치가 가지는 딜레마가 피해자로서 자신을 정체화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갈등한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지자들은 단지 성폭력 개념규정을 피해자만이 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규정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상처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생존자를 돕기 위해 지원자가 가져야할 위치

피해자 중심의 사건지원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사건지원의 전 과정에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심의 사회에서의 수동적이고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생존자가 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이 부분은 특히 지원자들이 생존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부분이다. 지원자들은 생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위치가 아니라 생존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같이 의논해나가는 안내자의 위치에서 만나야 한다. 그러나 이런 위치에 대해 생존자와 지원자 모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생존자가 만약 지원자를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지원자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지원자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진공상태에 놓여있지 않는 한 생존자가 원하는 그대로의 해결을 재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갑자기 가지게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방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안전한 것들만을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지원자의 역할은 아니다.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한계를 깨는 것 역시 지원자의 목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전달하고, 현재 이미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같이 해결을 모색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반대로 생존자가 지원자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데서 나오는 어려움도 있다. 피해자 심리의 특징 중 하나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인하고 분노를 내면화하는데 있다. 이 내면화된 분노의 대상은 흔히 자기 자신이 된다. 그리고 때로 우울증과 죄책감, 무력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자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 자신의 무력함과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자 역시 무력하게 만들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전도하려 하는 것이다. 지원자로서 생존자의 분노의 표적이 되어 본 사람이라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역시 생존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하는 극복의 행동들이다. 이럴 때 지원자는 자기 자신 혹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쏟아내는 분노는 상황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고 생존자의 우울증과 무력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을 맺으며

가해 중심 사회에서 피해생존자 중심으로 사건을 지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해 중심 사회에서 피해 경험을 드러내고 싸우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아도 말이다. 성폭력 피해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침범시키고, "나"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 화과정을 침범하는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는 지지자를 만나는 기쁨으로, 지원자는 자기 성장과 성찰의 기회로 생존자를 만날 때, 그리고 그 만남이 개인성과 관계성을 복원하는 과정이 될 때, 우리는 성폭력 피해의 극복이라는 오랜 여정에서 치유의 희망을 발견해갈 수 있게 될 것이다.